

1998. 7.
제78회 임시회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율위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홍 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율위한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7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95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 및 환경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안 제3조, 제4조)
-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안 제5조)
- 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항(안 제7조)
- 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 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안 제13조)
- 바.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와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제재 조항(안 제2조 제7호, 제4조1호, 별표4)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료관리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11조
- 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환경부)

○ 입법예고 : '98. 6. 5. ~ '98. 6. 25(20일간)

가. 서구새소식(호외) 게재 공고

나. 구청·각 동사무소 게시판 공고

다. 조례안 배부 : 구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서구지부,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등

라. 조례제정안 설명회 개최 : '98. 6. 18

- 참여자 :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통장, 각 동 사무장, 청소담당 등 331명

□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타당성

-사람들의 인식이 물질의 양에서 **삶의 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미증유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환경문제**는 삶의 질의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우리 고장 특유의 음식문화와 결부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 제도적으로는 그 동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몇몇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산발적인 규정에 그치고 그 내용도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문제해결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번의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일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에서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항 등을 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내용적으로는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중앙부처(환경부)의 행정행태에 대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만 해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97년도에 2차, '98년도에 1차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97. 5. 6의 개정에 이어 '97. 9.26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항 신설, '98. 1.12 음식물쓰레기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이 그것인데 평균 4개월에 한 번 정도 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환경보존을 위한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이토록이나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이나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무책임한 졸속행정을 강요하는 것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획일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조례제정안 검토요지

-조례제정의 취지나 타당성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와의 관계를 살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을 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조례제정안 제3조에서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며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2.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관련

- 1)조례제정안 제2조제7호의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 규정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2조제7호와 중복된 규정인 바, 조례제정안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7. 9. 26 신설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2조제7호는 삭제함이 바람직합니다.
- 2)조례제정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1.에 다.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경우가 들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2. 라.의 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3)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8조 제5항도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3. 조례제정안 제3조 ②의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성격을 밝혀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조례제정안 제4조 ②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를 ‘재활용가능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로 하는 것이 이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5. 조례제정안 제8조에서

1)①의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별하여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별하여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와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2)②의 ‘~제작할 수 있다’를 ‘~제작한다’로 하여야 합니다.

3)③의 ‘단 구청장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것으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논리적 해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④의 ‘단 구청장은 크기·용량을 현실에 맞게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폐기물관리조례 별표4의 단서규정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6. 조례제정안 제9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8조 제4항에 함께 규정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 1)조례제정안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를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으로 하고
- 2)④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관리·판매인준수사항·지정해제 등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면 됩니다.
- 3)그리고 조례제정안 ‘제10조~제14조’는 ‘제9조~제13조’가 될 것입니다.

7. 조례제정안 제10조 ①의 ‘~,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를 ‘~,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로 수정하는 것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8. 조례제정안 제15조는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0조에 폐기물 일반에 관하여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9. 위의 제안이 다 받아들여질 경우 조례제정안 ‘제16조(시행규칙)’은 ‘제14조(시행규칙)’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 이번 조례제정안 검토는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중복성이 배제된, 좀 더 효율적인 조례 및 조례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의 조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가 잘 구성된 조례 및 조례체계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